

발 간 등 록 번 호

수도법

2016.6.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수도법
2. 수도법 시행령
3.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 2016.7.28] 제1조

제2조(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5.25, 2011.11.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5.25, 2011.11.14>

④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시행일 : 2016.7.28] 제2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2013.12.30>

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

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 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5.25>
16. 삭제 <2010.6.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9.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1.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2.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 2016.7.28] 제3조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5.25, 2011.4.14, 2011.11.14,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0.5.25, 2011.11.14>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5.25, 2011.11.14>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0.6.8>
 10.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 ⑧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용수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3.3.23>
- ⑨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 [시행일 : 2016.7.28] 제4조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1.14>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삭제 <2010.6.8>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4>

[시행일 : 2016.7.28] 제5조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10.6.8, 2011.11.14>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10.5.25, 2011.11.14>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6조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2013.6.4>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12.27>

[시행일 : 2016.7.28] 제7조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12.30>

[본조신설 2010.5.25]

[시행일 : 2016.7.28] 제7조의2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취수·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 2016.7.28] 제7조의3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8조

-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8조의2

-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7.28] 제9조

- 제10조**(재원 등) ①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7.28] 제10조

-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시행일 : 2016.7.28] 제11조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7.28] 제12조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누구든지 수도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도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시행일 : 2016.7.28] 제13조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12.30>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 2016.7.28] 제14조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3.12.30, 2016.1.27>

1.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본조신설 2010.5.25]

[시행일 : 2016.7.28] 제14조의2

제14조의3(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 2016.7.28] 제14조의3

제14조의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 2016.7.28] 제14조의4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시행일 : 2016.7.28] 제15조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도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15조의2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15조의3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15조의4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일 : 2016.7.28] 제16조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③인가신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④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7.28>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일 : 2016.7.28] 제17조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5.25>

③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18조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다.

[시행일 : 2016.7.28] 제19조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16.7.28] 제20조

-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12.30>
-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21조

-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22조

-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를 범위에서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개정

2011.11.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를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5.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5.25>

[시행일 : 2016.7.28] 제23조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 관리 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1.14]

[시행일 : 2016.7.28] 제23조의2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2.3>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7.28] 제24조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 2016.7.28] 제24조의2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7.28] 제25조

제26조(수질기준)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12.30>

④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0>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시행일 : 2016.7.28] 제26조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 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4>

[제목개정 2011.11.14]

[시행일 : 2016.7.28] 제27조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3.12.3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11.14>
-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11.14>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4>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4>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1.11.14>

[시행일 : 2016.7.28] 제28조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항목·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4]

[시행일 : 2016.7.28] 제28조의2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⑤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할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29조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2011.11.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2011.11.14>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5.25>

[시행일 : 2016.7.28] 제30조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7.28] 제31조

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6.7.28] 제32조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7>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7>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33조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5.25, 2011.11.14>

③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시행일 : 2016.7.28] 제34조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7.28] 제35조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36조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시행일 : 2016.7.28] 제37조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시행일 : 2016.7.28] 제38조

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시행일 : 2016.7.28] 제39조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40조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이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④ 삭제 <2011.7.28>

[시행일 : 2016.7.28] 제41조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6.7.28] 제42조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시행일 : 2016.7.28] 제43조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6.7.28] 제44조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7.28] 제45조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동의·면허·승인·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1.7.28, 2011.11.14, 2014.1.14, 2014.6.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
- ②인가관청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조지조성비는 제외한다.

[시행일 : 2016.7.28] 제46조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4>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일 : 2016.7.28] 제47조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8.4>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7.28>

[시행일 : 2016.7.28] 제48조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국토교통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 2016.7.28] 제49조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50조

제4장 전용수도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 2016.7.28] 제51조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5.25, 2011.11.14>

[시행일 : 2016.7.28] 제52조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53조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54조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4>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일 : 2016.7.28] 제55조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 2016.7.28] 제55조의2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시행일 : 2016.7.28] 제56조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7.28] 제57조

제58조(감독)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58조

제59조(「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6.7.28] 제59조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6.7.28] 제60조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시행일 : 2016.7.28] 제61조

제7장 감독

제62조(지휘·감독)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도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62조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착수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인가신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7.28, 2011.11.14, 2013.12.30>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8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경우
 5.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9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65조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 2016.7.28] 제63조

- 제64조(개선 명령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인가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도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수도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64조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65조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 2016.7.28] 제66조

제8장 보칙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시행일 : 2016.7.28] 제67조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시행일 : 2016.7.28] 제68조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시행일 : 2016.7.28] 제69조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시행일 : 2016.7.28] 제70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

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1.7.28>

[시행일 : 2016.7.28] 제71조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일 : 2016.7.28] 제72조

제73조(기술 연구·개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73조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74조

제74조의2(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

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74조의2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시행일 : 2016.7.28] 제75조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시행일 : 2016.7.28] 제76조

제77조(국유지의 매각·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시행일 : 2016.7.28] 제77조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10.5.25, 2011.7.28,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협회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3.23, 2013.12.30>

[시행일 : 2016.7.28] 제78조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3.12.30>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시행일 : 2016.7.28] 제79조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25>

[시행일 : 2016.7.28] 제80조

제9장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37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시행일 : 2016.7.28] 제81조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6.7.28] 제82조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3.12.30, 2014.3.24>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 1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1의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 1의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4. 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5.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9.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0.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시행일 : 2016.7.28] 제83조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3. 삭제 <2011.7.28>
4.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시행일 : 2016.7.28] 제84조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14, 2013.12.30>

1. 제19조제2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2. 삭제 <2011.7.28>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 제28조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29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삭제 <2010.5.25>
7. 제32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2조제2항(제23조제3항과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게 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9. 제39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10. 삭제 <2010.5.25>
11. 제52조(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12.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시행일 : 2016.7.28] 제85조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 2016.7.28] 제86조

제87조(과태료) ①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1. 삭제 <2016.1.27>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 4의2.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0.6.8>
- 3의2. 삭제 <2011.7.28>
- 3의3. 삭제 <2011.7.28>
- 3의4. 삭제 <2011.7.28>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 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 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

상수도 설치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6.1.27>
- ⑥ 삭제 <2010.5.25>
- ⑦ 삭제 <2010.5.25>
- [법률 제8370호(2007.4.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2007년 9월 27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16.7.28] 제87조

부칙 <제8370호, 2007.4.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 제3조** (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하수도사업자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

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도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⑬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 (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0>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

<34>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66호, 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805호,2007.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7>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7> 까지 생략

<50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4항, 제5항, 제8항 전단 및 후단,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항, 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6호, 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401호, 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잠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774호, 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17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53조, 제66조제1항, 제79조제1호,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87조제2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위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359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42> 부터 <8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976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마을상수도는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지정한 소규모급수시설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085호,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0>까지 생략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141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518호,201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6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29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8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3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2호"로 본다.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5호, 2014.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14]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②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飲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4>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 나.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500미터 미만인 것
- 다. 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문개정 2014.6.30]

제5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7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교체 등
9. 삭제 <2011.6.8>
10.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제7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11.26>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08.2.29, 2012.1.26, 2012.5.14, 2013.3.23, 2014.11.1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2.5.14>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2.5.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2.5.14>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2.5.14>

④ 제3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2.5.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2.5.14>

⑥ 환경부장관은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3, 2010.11.26, 2013.5.31>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3.5.31>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4.11.28>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騒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마을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6, 2012.1.26, 2012.5.14>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본조신설 2010.11.26]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문개정 2014.11.28]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②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이나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6>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 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2.1.26>

제22조(수질오염방지지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지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2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3조(비용부담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초소·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
4.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1.26>

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11.26]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11.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1.26]

제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4.6.30]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6, 2012.1.26,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③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1.26, 2012.1.26>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9.12.24, 2010.11.26>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설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추는 것
 2.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추는 것
 3.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추는 것
 4.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는 것
 5.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추는 것
 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것
- ② 수도시설의 위치와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③ 수도시설은 수압·토압·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오염되거나 쉼 염려가 없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삭제 <2010.11.26>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신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①법 제2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②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6.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4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2년)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졸업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③시설용량이 1일 1천 톤 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그 수도가 소독설비 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6.30>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

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 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우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0.11.26, 2012.5.14>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08.12.3, 2010.1.27>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 2010.1.27>

⑤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①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26>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0.11.26>

③ 삭제 <2010.11.26>

④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11.26]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3>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8.1.3>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만 면제한다.

⑥ 자격시험의 출제·채점·응시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1.3>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삭제 <2010.11.26>

제45조 삭제 <2010.11.26>

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6.30>

[제목개정 2014.6.30]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3.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6.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7.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 이상인 경우
8.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 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mg/L를 초과하는 경우
11.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5.14]

제48조 삭제 <2012.5.14>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4.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

정 2009.7.16, 2012.12.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도서관
 - 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다. 청소년수련시설
 - 라.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26>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③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한다.

④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12.24, 2012.7.20>

1.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⑤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⑥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도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도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도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2014.6.3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6.30>

[본조신설 2010.11.26]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4.6.30]

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제33조,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26>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3. 삭제 <2010.11.26>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②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0>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30>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수도에 관한 통계 작성과 관련 도서 발간
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
4. 수도 관계 시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교육 및 연수
6. 수도 관계 국제 교류
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61조(협회의 감독) ①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2.5.14>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 주소와 현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 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1.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1.3>

제66조(수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 법 제75조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보조할 경우에 국고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도물 생산원가, 수도요금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17]

[대통령령 제21829호(2009.11.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26, 2012.1.26, 2012.5.14>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도물의 공급 중지
3. 삭제 <2012.1.26>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5. 제11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11.26, 2012.5.14, 2014.6.30>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2.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등
3. 법 제62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 구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관할 구역에 따른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2.5.14>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군의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계획은 제외한다.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2호의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고시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관한 인증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10.11.26>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08.6.20, 2010.11.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0.11.26, 2013.3.23>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 및 연구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14.6.30>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질약전문업의 등록
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
4.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

[제목개정 2008.6.20]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2014년 7월 1일
2.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2014년 7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2014년 7월 1일
- 3의2. 제25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물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2014년 7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 2014년 7월 1일
5. 제52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2014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5.14]

부칙 <제20243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월 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89호,2007.9.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제20521호,2008.1.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부칙** <제20680호,2008.2.29>**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763호,2008.4.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46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8호,2008.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갹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1829호,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06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제30조, 제48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부담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원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운영 중인 취수시설 등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로서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I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 등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개발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010년 11월 26일 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로서 2010년 11월 26일 이후 그 지정·개발이 완료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하며, 이하 "기존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이라 한다) 외의 공장을 신설하는 행위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3.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4.15]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4.15]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3416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57호,2012.1.26>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84호,2012.5.14>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229호,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보호관찰소, 갯생보호소"를 "갯생보호시설"로 한다.

부칙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제24560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부칙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09호,2014.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등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증설 또는 업종변경 절차에 이미 착수한 공장의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거나 그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25430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85호,2014.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용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별표 1의2] <신설 2010.11.26>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항목	기준	항목	기준
카드뮴	0.0005mg/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mg/L 이하
수은	0.0001mg/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mg/L 이하
셀레늄	0.001mg/L 이하	페놀류	0.0005mg/L 이하
납	0.001mg/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 이하
비소	0.001mg/L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6가크롬	0.005mg/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mg/L 이하
시안	0.001mg/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mg/L 이하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1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mg/L 이하
불소	0.15mg/L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사염화탄소	0.0002mg/L 이하	색도	0.5도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004mg/L 이하	탁도	0.2NTU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03mg/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mg/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mg/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mg/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mg/L 이하	아민류	0.01mg/L 이하
벤젠	0.001mg/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mg/L 이하
아연	0.3mg/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mg/L 이하
철	0.03mg/L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8mg/L 이하
구리	0.1mg/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mg/L 이하
나트륨	20mg/L 이하	스티렌	0.002mg/L 이하
망간	0.03mg/L 이하	1,2-부타디엔	0.001mg/L 이하
염소이온	25mg/L 이하	1,3-부타디엔	0.001mg/L 이하
증발잔류물	50mg/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mg/L 이하

비고: 납, 비소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타. 폴리옥시메탈렌 또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페놀, 시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불소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VOCs
쳐.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비고

1. 위 표에서 “VOCs”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 2.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cm²/L 이하인 경우는 과

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별표 1의3] <신설 2014.6.30>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구 분	등 록 기 준
가. 시설	사무실
나. 장비	다음 1)부터 4)까지의 장비를 각각 갖추 것 1) 관로탐지기: 금속 및 비금속 각 1대 이상 2) 수압계: 연속식 4대 이상 3) 유량계: 연속식 1대 이상 4) 누수탐지기(전자식): 청음식 2대 이상 및 다지점 상관식 1세트 이상
다. 기술능력	다음 1)부터 4)까지의 기술능력을 각각 갖추 것. 다만, 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2)·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2)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으며, 3)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4)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

구 분	등 록 기 준
가. 시설	사무실
나. 기술능력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비고: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부분야(중직부분야) 중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 분야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적용시기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10만㎥ 이상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2009년 7월 1일부터
5천㎥ 이상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5백㎥ 이상 5천㎥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1일부터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등 급	응 시 자 격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별표 4] <개정 2012.5.14>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제67조제3항 관련)

명칭	관할구역
한강유역 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낙동강유역 환경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은 제외한다)
금강유역 환경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영산강유역 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제주 특별자치도

[별표 5] <개정 2014.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1호	30	50	100
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	500	700	1,000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법 제87조제2항	200	250	300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제2호				
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3호	300	300	300	
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2호	50	70	100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3호의2	300	300	300	
아.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3호의3	300	300	300	
자.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4호	100	200	300	
차. 법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4호의2	300	300	300	
카.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4호의3	300	300	300	

타.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4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파.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5호	200	250	300	
하.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5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거.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6호	10	50	100	
너.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 제87조제3항 제7호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30	40	50
2) 저수조청소업자		50	70	100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0	70	100
더.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8호	50	70	100
러.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6호	200	250	300
머.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7호	300	300	300
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9호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100	100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6.3.3] [환경부령 제00642호, 2016.3.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법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1.27>

[제목개정 2012.1.27]

[제6조에서 이동 <2012.1.27>]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변경 공고)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7.1>]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1. 「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다.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의 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마.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바.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전문개정 2014.12.1]

제3조(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가.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다.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4.12.1]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5]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1]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상호

나. 대표자

다. 사업장 소재지

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7.1]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7.1]

제7조 삭제 <2011.6.9>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5.17]

제10조 삭제 <2010.11.29>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

돛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급수설비의 검사 예정일
2. 급수설비의 검사 내용
3. 준비서류 등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7.1]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2.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 자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12.5.17>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29>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11.29, 2012.5.1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7, 2010.11.29>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6.27>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2008.6.27>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7>

1.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수질기준(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오염의 발생일시·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17>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같은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개정 2014.7.1>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卵胞囊)을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할 것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상수도
2. 지방상수도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1>

1. 인증기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
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④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7]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 항목, 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 검사항목, 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 급수량, 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 원수의 수질 정보
5.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 원인, 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12.5.17]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7]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3조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2.5.17]

제24조(긴급정지) ①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정지의 일시·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5.17, 2013.3.23>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4.7.1>]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4.7.1>]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 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6.27]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본조신설 2014.7.1]

제3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제4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31조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장비와 기술인력: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30]

부칙 <제244호, 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14호 수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 월30일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20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 (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호,2007.12.26>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 : 1mg/ℓ 이하"를 "아연 : 3mg/L 이하"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3호,2007.12.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호,2008.2.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08.6.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1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6호,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입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부칙 <제417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445호,2012.1.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12.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 제7호가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m³/일 이상인 취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m³/일 이상 50,000m³/일 미만인 취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3 제7호나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m³/일 이상인 정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m³/일 이상 50,000m³/일 미만인 정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3. 별표 3 제7호다목 및 라목의 시설: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462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43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설비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급수설비의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9호,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6호,2015.3.25>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201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3.3.>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2제2호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
곡물 도정업	10611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떡류 제조업	10711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빵류 제조업	10712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13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 조업	10730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장류 제조업	10743	산분해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커피 가공업	10791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차류 가공업	10792	건조된 상태의 차류를 생산하거나 단순 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삼제품 제조업	10795	1차 가공된 홍삼을 이용하여 농축 또는 추출 등 2차 가공하는 경우 또는 농축된 인삼액을 단순 희석하여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 <개정 2012.6.29>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적용시기	기준
2012년 7월 1일부터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2014년 1월 1일부터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비고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수압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별표 2의2] <신설 2014.7.1>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 나. 위반행위를 하여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은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지원중단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을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 1) 등록취소는 6개월 이내의 지원중단(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으로 감경할 수 있다.
 - 2) 지원중단은 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중단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호	등록취소
나.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3 제2호	6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별표 3] <개정 2012.5.17>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1. 취수시설**

가. 지표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연중 계획된 1일 최대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 2)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또는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에 취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홍수(洪水)·세굴(洗掘: 강물에 의하여 강바닥이나 강둑이 패는 일)·유목(流木) 또는 유사(流砂)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및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보(洑) 또는 수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 또는 수문 등이 홍수 시 유수(流水)의 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5) 계획취수량을 원활하게 취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스크린·침사지(沈沙池) 또는 배사문(排沙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가목1) 및 2)의 사항
- 2) 수질오염 및 염수침투의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수인 경우에는 대수층(帶水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복류수(伏流水)인 경우에는 장래 유로(流路)변화 또는 하상(河床)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천 정비계획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집수매거(集水埋渠)는 노출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고, 막힐 우려가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 4) 외부로부터의 오염, 독극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저수시설

가. 저수시설은 갈수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저수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저수용량, 설치장소의 지형 및 지질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위치 및 형식이어야 한다.

다. 지진 및 강풍에 따른 파랑(波浪)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로(餘水路)와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기(曝氣)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바. 저수시설은 움직이거나 뒤집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가. 송수시설은 이송과정에서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수로(管水路)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형 및 지세에 따라 여수로·접합정(接合井)·배수(排水)설비·제수밸브·제수문(制水門)·공기밸브 및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내에 부압(負壓)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용하는 수압에 적합한 수격(水擊)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펌프는 최대 용량의 펌프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계획된 1일 최대도수량 및 송수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정수시설

가.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은 상수도시설의 규모, 원수의 수질 및 그 변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정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수시설에는 탁도, 수소이온농도(pH), 그 밖의 수질, 수위 및 수량 측정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농도와 접촉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제의 주입설비는 최대용량의 주입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소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독제로 액화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여과지(濾過池)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일 이하로 한다.

2) 여과사(濾過沙)의 유효경(有效徑)은 0.3~0.45mm, 균등계수(均等係數)는 2.0 이하, 모래층두께는 70~90cm로 한다.

3) 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통침전지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급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급속여과지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급속여과지는 여과층에 축적된 탁질(濁質) 등을 역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막여파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용량이 5,000m³/일 이상인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막모듈의 종류 및 배열구성, 전처리 여부, 공정구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2009년 6월 30일부터 막여파를 하는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 원수의 수질 및 수온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2)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적절한 통수성 및 내압성을 갖추어야 한다.
- 3) 원수의 수질에 따라 약품 주입, 혼화설비, 응집지, 침전지 등의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배수시설

가.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압으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설비(이하 "배수지등"이라 한다)와 적절한 관경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구역으로 배수구역을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最少動水壓)은 150kPa(1.53kgf/cm²)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정수압은 740kPa(7.55kgf/cm²)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내는 대기압(大氣壓)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수지등은 수요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용량(계획하는 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이어야 하며, 저류용량 500m³ 이상인 배수지는 비상시 또는 청소시 등에도 배수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배수관은 부압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상수도 관로의 필요한 위치에 수량·수질측정 및 점검·보수 등 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도물이 장기간 적체되는 배수관에는 주기적으로 수도물을 배수할 수 있는 제수밸브와 배수(排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부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은 단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연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가.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고장 등에 따른 수도물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취수펌프 및 송수펌프는 가장 큰 용량의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비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호 교대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펌프 및 가압펌프는 수요변동과 사용조건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정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대수 및 형식이어야 한다.

라. 전선로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시설용량을 고려하고, 계측제어설비는 고장과 사고에 대비한 예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재해나 비상사태 시에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밸브 등 재해대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도시설에는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가.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m³/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상수원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표수의 취수장·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천 등이 유입되지 않는 같은 수계 상류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원수를 사용하는 취수장의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m³/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온도,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신설 2012.5.17>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별표 4] 삭제 <2010.11.29>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 조항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잘못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가,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나.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다.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2년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별표 5의2] <신설 2012.5.17>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4항 관련)

1. 탁도 등의 기준

가. 탁도: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3NTU(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0.5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일 것

나. 불활성화비(병원성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 이상일 것

2.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

가. 탁도

1) 검사 주기: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2) 검사 방법: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나. 불활성화비

1) 검사 항목: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2) 검사 주기

가) 잔류소독제농도: 연속측정장치로 측정

나)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 1일 1회 이상

3) 검사 방법: 정수지 유출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의 불활성화비 계산 방법과 제거율 계산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3] <신설 2012.5.17>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 (제18조의3제1항 관련)

1.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I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항목·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바이러스가 100개체/100ℓ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에 분기별 1회 검사할 것
-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2.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의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I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항목·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같은 원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추가로 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이 10개체/10ℓ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 2회 이상 검사할 것
-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3. 조사 결과의 보고

가. 수도사업자는 매반기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유량계는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가. 유량 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를 원격전송(TM)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pm 2\%$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량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계량기(이 별표 6에서는 유량계로 본다)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유량실을 박스식 또는 휴관식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나. 고장 시 수리하거나 다른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침수될 수 있는 곳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 라. 유량계 검출기(Sensor)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 직경의 3배 이상의 거리,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 바. 정전 시 최소 24시간 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가.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 여부, 유량계 접합부 등에서의 누수 여부 및 유량계실 침수상태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 나.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 다.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

[별표 6의2] <신설 2012.5.17>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 할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 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 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 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 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 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 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 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 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 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 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나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	--

[별표 7] <개정 2007.12.26>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분 류	항 목	검 사 방 법
기초조사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관종, 관경, 배관길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최소 6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뜯 직후 물 1리터를 채취한다.
	검사 항목 및 기준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mg/l 이하 - 납: 0.05mg/l 이하 - 구리: 1mg/l 이하 - 아연: 3mg/L 이하

2. 전문검사

분 류	항 목	검 사 방 법
현장 조사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비 고

-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7의2]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인 력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 설	-창고
장 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cm ²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m ³ /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부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별표 7의3]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저수조청소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5조	사업장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폐쇄명령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사업장 폐쇄명령			

[별표 8]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1. 장비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정수장	탁도계(연속식)	0~10NTU	대	2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대	2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	식	1
	슬러지농도계	디지털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2
	유량계	연속식	대	2
	표준체 및 진동기	0.15~2.0mm	식	1
	건조기	항온항습	대	1
	펌프효율 측정기	열역학적방식	대	1
	DO meter	멤브레인방식	대	1
	Jar tester 및 표준자(2L)	표준형	식	1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대	1
	침강실험장치	표준형	대	1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1,000 μ m	대	1
	SS/함수율 분석장치 (진공여과장치, Drying Oven)	표준형	식	1
상수도관망	관로탐지기	금속,비금속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10
	유량계	연속식	대	3
	관두깨측정기	초음파식	대	1
	누수탐지기	전자식	대	2
	비저항측정기	4-pin 방식	대	1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대	1
	비교유량측정기	D50mm 이하	대	1
	비교유량측정기	D75mm 이상	대	1

2. 기술인력

자 격 요 건	인원
가.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2
다.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3
라.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3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7.1>

물 절약전문업 [] 등록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업 종		주 생산품		
신청내용	등록신청 구분	·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 ·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의 사업[]			
	재발급신청 사유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분실[], 훼손[]			

「수도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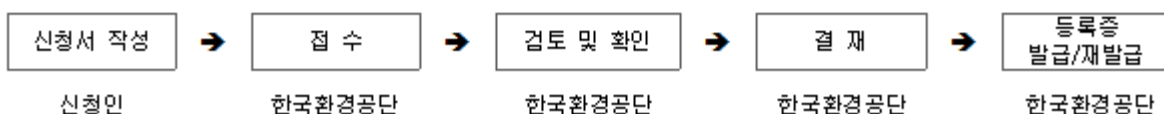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찢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찢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 X 297mm [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4.7.1>

등록번호 제 호

물질약전문업 등록증

1. 상 호:
2. 대표자: (생년월일:)
3. 사업장 소재지:
4. 등록 구분:
5. 등록 연월일:

「수도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 mm × 297 mm [백상지 80 g/m²]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수 도 사 업

[] 인가

[] 변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마을상수도 21일)	
신 고 인 (신 청 자)		성 명		생 년월일	
		주 소		전 화번호	
사업명칭					
사업목적					
급수구역					
목표연도					
수 원					
시 설 용 량 (m³/일)	구 분	계	생 활용수	공업용수	
	당 초				
	변 경				
인구 계획		총인구	명, 계획급수인구	명, 보급률	%
급수량		일 최대급수량(m³/일)		일 평균급수량(m³/일)	
사업기간		급수개시예정일			

「수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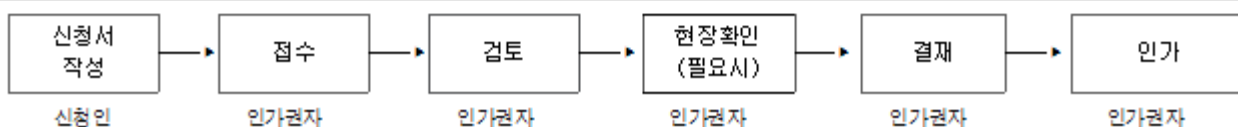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수도시설의 평면도
3. 수리계통도·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4.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5.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17>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

[] 체결

[] 해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위탁기관	기관명(담당부서명)		
	성명(대표자)		
	주 소 (전 화:)		
수탁기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		
위탁내용	위탁구분	[] 단순위탁 [] 복합위탁	계약(해지)일
	위탁기간 년(월 일 ~ 년 월 일)		
	위탁범위		
	위탁(해지)사유		

「수도법」 제2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서의([]체결 []해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작성요령	위탁구분 및 위탁범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17>

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 격 시 험 응 시 원 서 (원 본)

「수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도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수험번호 ※		환경부장관 귀하						
②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응시 시험	※ [] 1차 객관식 [] 2차 실기			
③ 성 명	(한글)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주민등록지)				⑥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			
⑦ 최종학력	[] 대학원 [] 4년제 대학 [] 2년제 대학 [] 고등학교 [] 기타		전공	[] 재학 [] 졸업 [] 수료	⑧실무 경력	담당업무 (년)		
⑨ 국가기술 자격 취득	종목		자격증번호		합격 일자			
⑩ 면 제 신 청(해당자만 기입)								
⑪ 시험면제	[] 상하수도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필기 시험합격	제()회 () 등급	원서기재 내용 접수담당 확인		
⑫ 면제과목	※		※		※			
⑬ 근무처							㉑	

○ 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부분) ○	⑭ 응시번호 ※							⑮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사 진 (3.5cm×4.5cm)
	⑯ 성 명		⑰ 주민등록번호							
	⑱ 면제과목 ※		※		※		※			
	⑲ 연락가능 주소 ※									
	⑳ 연락가능 전화번호		일반전화: ()			E-mail		휴대전화:		

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				사 진 (3.5cm×4.5cm)
㉑ 응시번호	※	㉒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㉓ 성 명		㉔ 주민등록번호	-	
㉕ 주소				
㉖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시험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응시원서 기재요령

- 이 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입니다.
- 1.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2. 제출일자: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 3. 성명 ㉑, ㉒, ㉓: 한글로 기재하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적어야 합니다.
- 4. 주민등록번호 ㉔, ㉕, ㉖: 주민등록번호는 칸에 맞추어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5. 주소: ㉗는 주민등록지 ㉘, ㉙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6. 최종학력 ㉚: 해당란에 ☒표를 하고 전공란에 전공 분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7. 실무경력 ㉛: 해당 분야 실무경력에 대하여 근무 중 담당 업무와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8. 면제신청 ㉜: 「수도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제43조에 따른 시험면제(과목면제 포함합니다)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 시험면제 ㉝:
 -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상하수도기술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수질관리기술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 제2호 및 제4호
 - 수질환경기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 수질환경산업기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 9. 면제과목 ㉞, ㉟: 취득한 자격종목의 응시 당시 시험과목과 응시하려는 현행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10. 근무처 ㊱: 근무 중인 사업장명 및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 11.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 원판으로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를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2. 접수된 수험원서·수수료,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시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까지 본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혀 있는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5)계산기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6. 수험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입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 수험자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25조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8.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
- 9.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접수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공고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합격 여부는 개별통보하지 아니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실기시험 실비납부 기간
· · · · ·	· · · · ·

10. 그 밖의 안내사항

가. 자격증 발급

- 준비물: 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수수료
- 발급 장소: 시행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나.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17>

(표지)



80mm×130mm(인쇄용지 120g/㎡)

(표지뒷면)

주의사항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는 이 자격증을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 보여야 합니다.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는 인적 사항, 주소, 자격취득 사항, 취업 중인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0mm×130mm(인쇄용지 120g/㎡)

(제2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자격 제

번호

성명:

등급:

생년월일:

주소:

자격취득일: 년 월 일

교부년월일: 년 월 일

환 경 부 장 직인

관

※ 소정의 직인, 실인 및 철인(천공)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80mm×130mm(인쇄용지 120g/㎡)

신상변동사항(제3면)

변동일자	변동항목	변동내용	기록자 인

80mm×130mm(인쇄용지 120g/㎡)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

정수 시설 운영 관리 사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사진 (반명합판) (3cm×4cm)	
	주 소 (전화번호 :)					
	자격 현황	자 격 등 급	자 격 번 호		취 득 일	
학 력	학 교 과 년 (졸업 · 수료)					
근 무 기 간		근 무 처			기록자 인	
		사무소명	등록번호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행정처분사항

< 자격취소 >

취소일자	취소근거	처분권자	기록자인

< 자격정지 >

처분일자	정지기간	처분누계	기록자인	처분일자	정지기간	처분누계	기록자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신설 2012.5.17>

(알 쪽)

(년 월)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보고

1. 정수장 및 여과/소독공정 개요

정수장 명			
위 치			
담당자명(전화번호)			
시설용량(㎥/일)		월평균 생산량(㎥/일)	
여과공정	여과방식		
	측정지점/방법		
소독공정	소독방법(소독제 종류)		
	소독지점		
	측정지점/방법		

2. 탁도 및 불활성비

항목	수질검사결과	
	평 균 (최대 ~ 최소)	기준초과
1. 탁도(Turbidity)	()	/
2. 잔류소독제 농도	()	/
3. OT계산값	()	/
4. 불활성화비	()	/
작성방법	1. 평균은 검체시료의 월간분석결과 산술평균값을 기입하고, 괄호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입한다. 2. 기준초과는 항목별로 “기준초과건수/총검사건수”를 기입한다.	

(뒤 쪽)

3. 기준위반 내역 및 조치결과

정수장 명	일 시	위반내용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작성방법	1. 위반내용란에는 탁도기준 위반, 불활성화비 부족 등을 초과 일시와 함께 기재한다 2.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란에는 원인분석·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등을 위해 조치한 내용, 소요예산, 지역주민 홍보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12.5.17>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 쪽)

저수조청소업 [] 개설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변경) 연월일			
개설(변경) 내용			
변경사유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개설(변경)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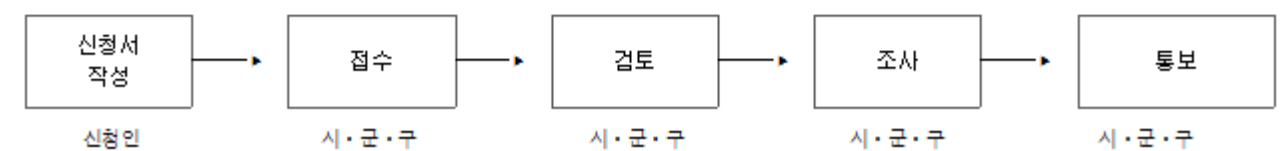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신설 2012.5.17>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 쪽)

신고번호 제 호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3.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 <신설 2012.5.17>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 쪽)

저수조청소업 **[] 휴업** **신고서**
[] 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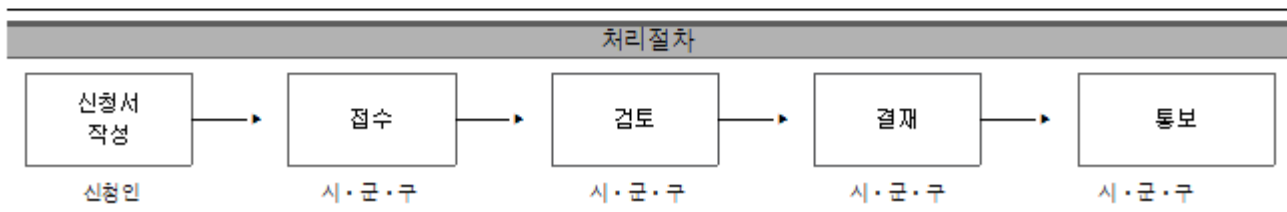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수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휴업(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휴업 또는 폐업 사유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 <신설 2012.5.17>

(앞 쪽)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실태보고서 (가축 사체 매몰지 관련)

소유현황	대표자(소유자 또는 관리자)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현황	연월일							
	처리방식							
	소독여부							
	소독약품							
	가축사체 매몰지와의 이격거리							
	가축매몰지 관측정 여부							
가축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관측정 수질								
연월일	수소이온 농도(pH)	온도 (℃)	산화환원 전위(ORP)	냄새	색깔	NH ₄ -N (mg/L)	염소이온	전기전도도(EC)
배출 유공관 수질								
연월일	수소이온 농도(pH)	온도 (℃)	산화환원 전위(ORP)	냄새	색깔	NH ₄ -N (mg/L)	염소이온	전기전도도(EC)
모니터링 결과			침출수 유출 여부					
매몰지 이설 계획 여부								
오염방지 대책 시행결과								
연월일	시행내용				오염방지대책 시행 후 수질검사 결과 초과여부		초과항목	
향후 시설 관리 계획(1년 이내)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및 '침출수 유출 여부' 판단은 "가축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해석 요령"에 따라 해석하여 해당 관측정의 상태를 단계와 유형으로 판단하여 기록한다.
2. 매몰지 이설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매몰지 이설 이전 전까지 시행한 오염방지 대책을 기입한다.
3. 오염방지 대책 시행 이후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여부 및 초과항목을 기입한다.
4. 향후 시설관리 계획은 수질기준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시설 준치, 개량, 폐쇄계획을 기입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5.17>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전용상수도 [] 인 가 신 청 서
(공업용수도)설치 [] 변 경 인 가
[] 변 경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는 즉시)
------	-----	------	-----------------

신청인 (시행자)	성 명 주 소
--------------	------------

사 업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급수구역				
목표연도	사 업 비 백만원			
수 원	수 질			
시설용량 ($\text{m}^3/\text{일}$)	구 분	계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당 초			
	변 경			
총인구(인)		계획급수인구(인)		보급률(%)
급수량	일최대급수량($\text{m}^3/\text{일}$)	일평균급수량($\text{m}^3/\text{일}$)	1일 1인당급수량($\ell/\text{일}$)	
사업기간		급수개시예정일	년	월 일

「수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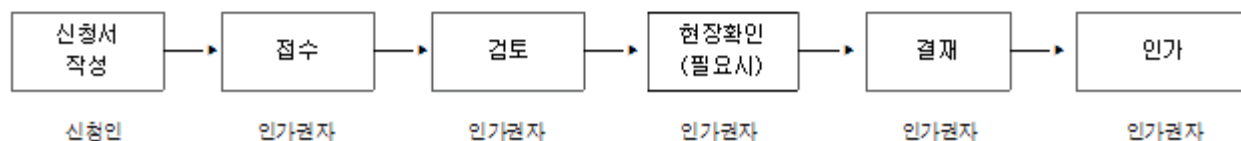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5.17>

전용상수도 [] 휴 지 신 고 서 (공업용수도) [] 폐 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시 설 내 역	급수구역(시설용량)		
	사용용도(급수개시일)		
휴지 또는 폐지 연월일			
휴 지 기 간			
휴지 또는 폐지 사유			

「수도법」 제52조제3항,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 상수도(공업용수도)의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재	→	인가
신청인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210mm×297mm[백상지 80g/㎡]

수도법

제 작 자 : 오진우
메일주소 : jwoh@kwater.or.kr
제작일자 : 2016.6.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